

	<h2 style="margin: 0;">지도교수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6-7
		제정일자	2014.03.01.
		개정일자	2026.05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59조에 따라 지도교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는 소속학과 학과장에게 지도학생을 배정 받은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단, 필요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하에 특임교수 및 초빙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
② 동아리지도교수는 학생성공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 전임교원으로 한다.

제3조(상담 및 지도) ①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교내·외 생활, 신앙생활, 교우관계, 진로, 취업, 학업에 관한사항을 상담 및 지도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학생의 동의를 얻어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동아리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은 동아리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한다.

제4조(상담내용기록 및 정보보호)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상담하며, 상담내용을 교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기록하며, 상담기록은 5년까지 보관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생상담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,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학생의 안전 및 신변의 위협에 관한 내용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, 관련기관(관련자)에 통지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제5조(집중지도 및 특별지도) ① 지도교수는 대학의 필요에 따라 학생들을 집중 지도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교내 전산망을 통해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매 학년도초(입학후 4주 이내), 지도교수는 신입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한다.

③ 매 학기초(개강 4주이내)에 학과 대표를 중심으로 학교생활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삭제 <2026.05.01.>

⑤ 지도교수는 안전사고, 음주사고, 폭력(성폭력·성희롱)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비) 총장은 교내 예산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에게 지도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대학교의 제반 규정에 준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기존의 지도교수제시행규정은 폐지하고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